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3109
----------	------

2025년 9월 2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5년 8월 11일
- 다. 회부일 : 2025년 8월 14일
- 라. 상정일 : 제332회 서울시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5년 9월 2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 가.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국제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4조)에 의거,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추진경과
 - 2025. 3. 24. ~ 5. 16.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 (총 39명)
 - 2025. 6. 9. 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 개최 (17명 선정)

나. 선정결과 : 총 17명(남 10명, 여 7명) ※ 세부명단 별첨

○ 국가 및 지역 : 16개국(※ 국명 가나다순)

국 가	인원	국 가	인원	국 가	인원	국 가	인원
네팔	1	몽골	1	사우디아라비아	1	중국	1
대만	1	미국	1	아제르바이잔	1	카자흐스탄	1
독일	1	베트남	1	영국	1	키르기스스탄	1
모로코	1	브라질	1	인도	2	페루	1

다. 향후일정(안)

○ 2025. 11월 : 2025년도 명예시민증 수여식 개최

라. 관련근거

1)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

2) 수여대상자 결정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제1항

-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3) 서울시의회 동의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제2항

- 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제2항¹⁾에 따라 2025년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로 선정된 17명의 후보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서울시 명예시민 현황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 제도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교류 역량 강화를 위해 시정 발전²⁾에 기여한 외국인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는 제도로, 별도의 조례 없이 1958년부터 시행됐으나 1972년에 현행 조례가 제정되어 근거가 마련되었음
- 명예시민은 후보자 추천 공모 → 심사위원회의 심사 →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을 방지하여 서울시 명예시민증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음
- 명예시민증의 수여 방식은 2가지로 서울시에 일정 기간 거주해 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수여’와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여³⁾’방식이 있음
- 현재까지 총 100개국 950명에게 명예시민증이 수여되었으며, 일반수여 596명, 특별수여 186명, 그 외 국제대회 참석 등으로 1958년부터 1990년까지 한시적 기간에 받은 수여자가 168명임(붙임1참조)

1)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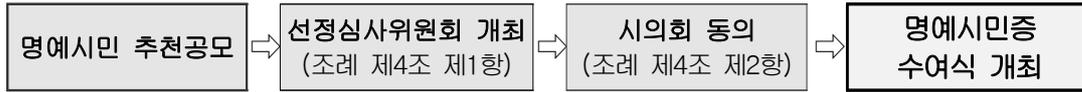
2) 서울시의 위상 제고, 경제발전, 과학·기술 분야 선진기술 도입 공헌 등

3) 특별수여는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단서 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방식 〉

① 일반수여

- 대상 :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자
- 추천 :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30인 이상의 시민
- 선발 및 수여절차



② 특별수여

- 대상 :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 수여 : 선정심사위원회 생략 가능, 시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 가능

- 명예시민에 선정되는 경우 시정 참여 기회가 제공되며 각종 행사에 초대 받거나 시립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부여됨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 혜택사항 〉

- 시정참여 :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등
- 행사초청 : 시 주관 축제 및 행사 초청(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국제회의, 공연 등)
- 무료입장 : 서울대공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식물원 등
- 시정소식 : 서울시 e뉴스레터, 시정 월간소식지 '서울사랑' 구독 등

다. 명예시민 선정의 적정성

- 이번 동의안에 포함된 명예시민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는 후보자 공고 및 추천접수(2025. 3. 24. ~ 5. 16.)를 통해 추천된 총 39명을 종합 심사하여 시정공로가 인정되는 17명을 선정(2025. 6. 9.)함
- 선정된 17명은 중증 소아환자 가족을 위한 주거복지시설 설립을 추진하거나, 다문화 인식제고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⁴⁾을 갖추었으며,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법한 '명예시민 선정 절차'를 거쳤는바 그

4)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적합성은 인정됨. 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심의 지원, 자료 제공에 대한 기준이나 선정자에 대한 소개 등을 구체적 방안을 조례나 규칙에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임

- 선정된 명예시민의 시정 참여는 기존보다 개선되었으나,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하겠음. 명예시민 제도·활동 소개와 홍보를 위한 누리집 개설, 명예시민 간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정기적 소통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명예시민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의 연 1회 연말 일괄 수여 방식은 각종 행사와 중복되어 사회적 관심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시의적절한 대응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음. 특히 K-문화에 대한 해외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공로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을 통해 서울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긴급 트랙', 수시 추천제도 도입, 관련 행사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식 개최나 반기·분기별 수여식 개최 등 탄력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의견

- 시장이 제출한 이번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과 선정 절차를 거쳐 시정 공로가 인정되는 17명을 선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명예시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의 개선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연도별 명예시민증 수여자

○ 연도별 명예시민증 수여자

(’25. 2월 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총 계	외국귀빈 (특별수여)	시정유공 (일반수여)	국제대회 참석 등 (’58~’90년 동안 한시적 수여)
총 계	950	196	596	168
공로시민증(소계) (1958~1969)	136	28	70	38
명예시민증(소계) (1973~)	814	158	526	130
1973~1980	155	6	20	129
1981~1990	13	5	7	1
1991~2000	135	7	128	-
2001	14	3	11	-
2002	11	4	7	-
2003	9	2	7	-
2004	23	11	12	-
2005	38	27	11	-
2006	27	10	17	-
2007	13	2	11	-
2008	16	1	15	-
2009	17	1	16	-
2010	42	2	40	-
2011	17	3	14	-
2012	12	1	11	-
2013	16	0	16	-
2014	21	9	12	-
2015	25	9	16	-
2016	30	9	21	-
2017	21	6	15	-
2018	32	9	23	-
2019	34	15	19	-
2020	21	2	19	-
2021	13	4	9	-
2022	23	5	18	-
2023	17	2	15	-
2024	19	3	16	-

※ 국제대회 참석 등 : 아세아 및 서태평양지구 건설업자대회(1964년), 제14차PATA총회(1965년), 국제군진의약협회(1977년), 미스유니버스 참가(1980년) 등

○ 국적별 : 총 100개국 950명

(’25. 2월 말 기준, 단위: 명)

대륙	국적		계 (단위명)	성별		대륙	국적		계 (단위명)	성별	
				남	여					남	여
아시아 (21개국) 248명	1	네팔	13	12	1	유럽 (32개국) 288명	1	그리스	9	7	2
	2	대만	17	17	0		2	네덜란드	12	8	4
	3	말레이시아	5	4	1		3	노르웨이	5	3	2
	4	몽골	10	7	3		4	덴마크	9	7	2
	5	방글라데시	3	1	2		5	독일	54	46	8
	6	베트남	10	9	1		6	러시아	14	11	3
	7	스리랑카	3	1	2		7	루마니아	3	2	1
	8	싱가포르	8	7	1		8	몰도바	1	0	1
	9	우즈베키스탄	9	5	4		9	몰타	1	0	1
	10	인도	6	4	2		10	벨기에	17	10	7
	11	인도네시아	9	7	2		11	벨라루스	1	1	0
	12	일본	47	39	8		12	불가리아	2	2	0
	13	중국	48	39	9		13	스웨덴	7	6	1
	14	카자흐스탄	11	10	1		14	스위스	6	3	3
	15	캄보디아	1	1	0		15	스코틀랜드	1	0	1
	16	키르기스스탄	4	2	2		16	스페인	11	7	4
	17	타히티	1	0	1		17	슬로바키아	1	1	0
	18	타지키스탄	2	2	0		18	아이슬란드	1	0	1
	19	태국	19	16	3		19	아일랜드	6	5	1
	20	파키스탄	6	5	1		20	아제르바이잔	2	1	1
	21	필리핀	16	12	4		21	에스토니아	2	1	1
중동 (9개국) 26명	1	사우디아라비아	7	7	0	22	영국	32	22	10	
	2	아랍에미리트	5	4	1	23	오스트리아	7	5	2	
	3	알제리	2	1	1	24	우크라이나	2	2	0	
	4	오만	1	1	0	25	이탈리아	15	11	4	
	5	요르단	2	2	0	26	조지아	2	2	0	
	6	이라크	3	3	0	27	체코	4	3	1	
	7	이란	2	2	0	28	터키	14	12	2	
	8	이스라엘	3	2	1	29	폴란드	6	4	2	
	9	이집트	2	1	1	30	프랑스	31	18	13	
중남미 (21개국) 84명	1	과테말라	2	1	1	북미 (2개국) 232명	1	미국	211	167	44
	2	도미니카	2	1	1		2	캐나다	21	15	6
	3	멕시코	16	13	3	아프리카 (12개국) 46명	1	가나	2	2	0
	4	바하마	1	0	1		2	나이지리아	8	7	1
	5	베네수엘라	2	0	2		3	남아프리카공화국	6	6	0
	6	벨리즈	1	0	1		4	레소토	1	1	0
	7	볼리비아	3	0	3		5	세네갈	2	2	0
	8	브라질	8	6	2		6	수단	11	11	0
	9	아르헨티나	5	3	2		7	앙골라	3	2	1
	10	에콰도르	1	0	1		8	에티오피아	4	4	0
	11	엘살바도르	1	1	0		9	차드	1	1	0
	12	온두라스	2	1	1		10	코트디부아르	2	2	0
	13	우루과이	1	0	1		11	콩고	3	3	0
	14	칠레	6	5	1		12	콩고민주공화국	1	1	0
	15	코스타리카	6	4	2		13	탄자니아	2	2	0
	16	콜롬비아	11	8	3	오세아니아 (3개국) 25명	1	뉴질랜드	11	10	1
	17	트리니다드토바고	1	0	1		2	파푸아뉴기니	1	0	1
	18	파나마	1	0	1		3	호주	13	8	5
	19	파라과이	1	0	1						
	20	페루	12	10	2						
	21	푸에르토리코	1	0	1						

주요 명예시민 활용사례

< 국제행사 및 회의 참여 >

- ▶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행사 한국어 사회('25.5.24) : 할러 카타리나('24년 명예시민, 오스트리아)
- ▶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공모 수상작 공개 행사초청('25.2.3) : 바트 반 그눅튼('24년 명예시민, 네덜란드)
- ▶ 2024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증 수여식 한국어 사회('24.12.20) : 카를로스 고리토('20년 명예시민, 브라질)
- ▶ 2023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증 수여식 한국어 사회('23.12.8) : 굽타 아비셰크(력키)('22년 명예시민, 인도)
- ▶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행사 한국어 사회('23.6.17) : 굽타 아비셰크(력키)('22년 명예시민, 인도)
- ▶ 「서울 도시경쟁력 글로벌포럼」 명예시민 초청('23.2.14) : 슈산트 사하스트라부떼 등 총 15명 참석
- ▶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행사 한국어 사회('22.10.22) : 줄리안 퀴타르트('20년 명예시민, 벨기에)
- ▶ 「CAC 글로벌 서밋 2020」 패널 참여('20.6.1) : 수잔 샤키아('19년 명예시민, 네팔)

< 위원회 참여 >

- ▶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
 - 난시 모니카('16 명예시민, 볼리비아), 리고베르토 반타 주니어('18 명예시민, 필리핀) 등 7명
- ▶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 서울시외국인투자자문단(FIAC)
 - 제프리 존스('20 명예시민, 미국), 발라카 니야지('20 명예시민, 인도) 등 15명
- ▶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
 - '25년 심사위원 : 캐서린 앤 코르테자('23 명예시민), 이 올리비아('24 명예시민)
 - '24년 심사위원 : 캐서린 앤 코르테자('23 명예시민), 아마도바 라힐('23 명예시민)
 - '23년 심사위원 : 아이엔요 티티('22 명예시민)
 - '22년 심사위원 : 보키예프 아흐로르존('21 명예시민)
 - '21년 심사위원 : 카를로스 고리토('20 명예시민)

< 기타 시정 참여 등 >

- ▶ 2025 서울시 유튜브 'Seoulite Project' 시리즈 콘텐츠 제작협업(알비올 안드레스('24년 명예시민) 등 3명)
- ▶ 2025 서울시 외국인 대상 뉴스레터 '서울라이프' 인터뷰(조나단 무어('23년 명예시민)) 등 2명
- ▶ 2023 외국인 명예시민 대표 아리랑TV 인터뷰 ※'23.12.22. 아리랑TV 「이슈 앤 인사이드」 출연
 - 로라 프리실라 아코스타('23년 명예시민, 스위스) 등 2명
- ▶ 서울사랑 잡지 인터뷰(외국인 주민 분야 대표)
 - 나드르베코바 굴샤이크('22년 명예시민, 키르기스스탄) 등 2명
- ▶ 서울관광시장 다변화 추진위원회 할랄관광 관련 자문
 - 칼리드 이스마일('20년 명예시민, 말레이시아)
- ▶ 공정여행 캠페인 관련 사업 자문 : 카트린 거마이어('20년 명예시민, 프랑스)
- ▶ 2024년 관용의 날 행사 토크콘서트 패널 : 아마도바 라힐('23년 명예시민, 아제르바이잔)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의안 번호	3109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국제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4조)에 의거, 명예시민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2025. 3. 24. ~ 5. 16.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총 39명)
- 2025. 6. 9. 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 개최
(추천자 39명 중 17명 선정)

나. 선정결과 : 총 17명(남 10명, 여 7명) ※ 세부명단 별첨

- 국가 및 지역 : 16개국(※ 국명 가나다순)

국 가	인원	국 가	인원	국 가	인원	국 가	인원
네팔	1	몽골	1	사우디아라비아	1	중국	1
대만	1	미국	1	아제르바이잔	1	카자흐스탄	1
독일	1	베트남	1	영국	1	키르기스스탄	1
모로코	1	브라질	1	인도	2	페루	1

다. 향후일정(안)

○ 2025. 11월 : 2025년도 명예시민증 수여식 개최

라. 관련근거

1)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

2) 수여대상자 결정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제1항

-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3) 서울시의회 동의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제2항

- 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도시외교담당관 김형주 (☎ 2133-5288)